#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

**Compliance Program Regulations** 

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(이하, 'CP규정'이라 한다)은 대한전선 주식회사(이하, "회사")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회사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(적용 범위)

본 CP규정은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.

### 제3조(용어 정의)

CP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'CP'란 "Compliance Program"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한다.
- 2. '자율준수'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.
- 3. '공정거래 관련 법규'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, 시행령, 고시, 지침을 의미한다.
- 4. '최고의사결정기구'는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한다.
- 5. '자율준수관리자'는 회사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,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6. '자율준수운영팀'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·감독을 받아 CP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 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.
- 7. '자율준수편람'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, 절차, 사례 등 CP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.



#### 제2장 조직 및 업무

#### 제1절 대표이사의 의무와 권한

제4조(대표이사의 의무) ① 대표이사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, CP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- ②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 거래 담당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5조(대표이사의 권한)

대표이사는 CP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

- 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.
- ② 대표이사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.
- ③ 대표이사는 CP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.

####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와 권한

## 제6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, 그 후임자 또는 자율준수운영팀의 장은 전항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.

#### 제7조(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)

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으며, 독립적으로 행사한다.

1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권



- 2.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요구권
- 3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
-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
## 제8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)

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.

- 1.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
- 2.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(반기 1회)
- 3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
- 4.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
- 5.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
- 6.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
- 7.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
- 8. 임직원 제재 조치를 위한 협의회 소집 및 운영
- 9.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
- 10.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9조(자율준수운영팀)

- ① 자율준수운영팀은 회사의 법무팀으로서,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주관한다.
- ② '자율준수운영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,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(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)

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,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.

# 제11조(회사의 지원)

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

####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

# 제12조(임직원의 의무)

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회사의 CP규정, 사규, 각종 지침 및 자율준수편람 준수
- 2. 고객이나 협력업체,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
- 3.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 준수운영팀과 협의 또는 제보
- 4.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이수
- 5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등 준수

### 제3장 CP의 운영

####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

## 제13조(자율준수 의지의 천명)

-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·내외에 공표하고,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.
-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, 협력업체, 고객,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

####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

#### 제14조(자율준수편람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사항과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.



### 제15조(임직원에 대한 교육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(분기별 1회), 신규입사자 교육(채용시), 수시 교육(위반행위 발견 또는 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)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③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, 공정거래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.
- ④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.

## 제3절 내부감시체계(법 위반 모니터링 제도)

## 제16조(법 위반 모니터링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관련부서에 대한 자율준수실태 점검, 조사
  - 2. 위 1항의 점검,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
  - 3. 관련부서에 대책 이행요구 및 이행점검

#### 제17조(내부고발시스템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, 차별,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,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운영팀 소속 임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##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



### 제18조(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모니터링 등에 의하여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사내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담당 부서 및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
# 제19조(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)

- ①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팀 (부서)에 대해서 사규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임직원 및 팀 (부서)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면 사규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5절 운영성과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

#### 제20조(운영성과 평가)

- ①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 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운영성과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# 제21조 (공 시)

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상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

## 제22조 (경쟁당국과의 관계)

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,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# 제5장 기 타

## 제23조(권한의 위임)

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24조(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) 자율준수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.

## 부칙

- 1. 본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변경, 시행한다.
- 3.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변경, 시행한다.

